

# 林業後繼者 選拔基準 緩和

山林廳은 임업후계자 선발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임업후계자를 폭넓게 수용할수 있도록緩和하였다. 이에따라 임업후계자 12명이 새로 선발되었는데 제1차로 선발된 50명과 함께 임업후계자는 모두 62명으로 늘어났다. 개정된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및 새로 선발된 임업후계자는 다음과

林業後繼者 選拔 要件 및 節次 改正 對比表

現 行	改 正	改 正 事 由
<p>4. 林業後繼者 選拔</p> <p>가. 資格要件</p> <p>兵役을 畢하였거나 免除받은 40歳未滿의 農山村 居住者로 山林經營을 하고 있는 者中</p> <p>1) 現在 篤林家의 子女로서 山林을 贈與 또는 相續을 받아 農山村에 定着하여 林業에 從事하거나 하려는 者</p> <p>2) 所有山林 所在郡 管內에 居住하면서 20ha以上 山林을 經營하고 있는 者.</p> <p>3) 所有山林 所在郡 管內에 居住하면서 高等學校以上 教育機關에서 林業을 專攻한 者로써 10ha以上의 山林을 經營하고 있는 者.</p> <p>“所有山林”이라함은 當該 居住地 郡管內에 所有한 山林이나 國家로부터 貸付 또는 分收 契約한 貸付林이나 分收林도 包含된다.</p> <p>다. 選定節次</p> <p>林業後繼者는 다음과 같은 節次에 따라 選定한다.</p> <p>1) 郡守는 山林組合長 및 農業系 高等學校長의 協助 또는 希望者的 申請(申請書:別添1號 書式)을 받아 前年度 11月末까지 林業後繼者를 發掘</p>	<p>4. 林業後繼者 選拔</p> <p>가. 資格要件</p> <p>兵役을 畢하였거나 免除받은 40歳未滿의 所有山林 所在地管内에 居住者로서 山林을 經營하고 있는 者中</p> <p>1) 篤林家의 子女로서 林業에 從事하거나, 하려는 者.</p> <p>2) 10ha以上 山林을 所有하고 있는 者.</p> <p>3) 高等學校以上 教育機關에서 林業을 專攻한 者로써 5ha의 山林을 所有하고 있는 者</p> <p>“所有山林”이라함은 該當 居住地 道管內에 所有한 山林(直系尊屬所有山林 包含) 이거나 國家로부터 貸付 또는 分收契約한 貸付林이나 分收林도 包含하며,</p> <p>“所有山林 所在地管内”라 함은 山林이 所在한 道管内(特別市, 直轄市, 道廳所在地 除外)를 말한다.</p> <p>다. 選定節次</p> <p>1) 郡守는 山林組合長 및 農業系 高等學校長의 協助 또는 希望者的 申請(申請書:別添1號 書式)을 받아 林業後繼者</p>	<p>林業의 特殊性을勘案하여 山林을 經營하고 있으며 所有山林 所在地 管内에 居住하고 있는 者는 林業後繼者로 育成</p> <p>所有面積基準을 下向調整하여 後繼者가 될 수 있는 기회 부여</p> <p>‘89後繼者發掘實績을勘案해 中發掘하도록 發掘期限을削除</p>

<p>하여 别添2號 書式에 依한 山林經營實態를 調査 “林業後繼者 審議委員會”에 回附한다. 但, '89年度에 限하여 '89年 2月末 까지 發掘한다.</p>	<p>者를 發掘하여 别添2號 書式에 依한 山林經營實態를 調査 “林業後繼者 審議委員會”에 回附한다. 다만, 後繼者에 對한 申請과 發掘은 居居住地 當該郡으로 한다.</p>	
<p>2) 林業後繼者 審議委員會에서는 回附된 林業後繼者 選拔時 다음事項을 重點的으로 檢討하여 配點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選拔基準과 合當與否</li> <li>○ 定着意慾과 事業推進 能力</li> <li>○ 事業計劃의 適正與否</li> <li>○ 將來 農山村社會 指導者로서의 資質等</li> </ul>	<p>2) 現行과 같음</p>	
<p>3) 郡守는 林業後繼者 審議委員會 審議結果 别添3號 書式에 依한 配點이 60點以上인 者中 最高 得點者 1人을 原則의으로 選定하고, 别添4號 書式에 依據 그 結果를 道知事에 報告하고 道知事는 이를 綜合하여 山林廳長에게 報告한다.</p>	<p>3) 郡守는 林業後繼者 審議結果 别添3號 書式에 依한 配點이 60點以上인 者를 選定하고, 别添4號 書式에 依據 그 結果를 道知事에 報告하고, 道知事는 이를 綜合하여 山林廳長에게 報告한다.</p>	<p>當初 “最高 得點者 1人을 原則의으로 選定하고”의 意味는 郡當 2名以上도 選拔 可能토록 한 것이었으나, 이에 對한 解釋上의 混亂으로 後繼者 資格要件을 가진 者가 脱落되는 事例가 있어 이를 防止하기 為함.</p>
<p>4) 郡守는 林業後繼者의 資格을 審議하기 為위 “林業後繼者 審議委員會”를 設置 運營한다. ○ 林業後繼者 審議委員會는 委員長과 委員 4人以上으로 構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委員長: 副郡守</li> <li>• 委員: 山林廳長, 山林組合長, 篤林家 1人, 林業人 1人以上</li> </ul>	<p>4) 現行과 같음.</p>	

#### 새로選拔된 林業後繼者 住所録 (12名)

道	郡	性名	年令	面積	住 所	備 考
京畿	加平	李光運	33	150ha	가평군 가평읍 내리 647-10	0356-2-3823
"	楊平	池仁龍	37	38	양평군 지제면 월산리 679	0338-73-7185
"	安城	李炳圭	26	184	안성 삼죽면 미장리 53	0334-72-3111
江原	春城	陳鎬贊	25	440	춘천시 약산동 69-26	0361-53-3260
忠南	青陽	李熙萬	37	22	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344	0454-42-1572
	天原	吳泳憲	28	33	천원군 광덕면 보사원리 283	0417-567-0222
全南	潭陽	趙榮奎	37	50	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38	0684-82-8000
	靈光	金世雄	30	100	영양군 배수읍 길용 447	0686-52-6379
慶北	和順	張訓徹	30	300	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43-2	0612-874-4173
	의성	裴演傑	26	26	의성군 점곡 동변리 238	0576-33-3862
	盈德	南國鎮	29	29	영덕군 장수면 인량 122-1	0564-33-1392
慶南	晉陽	金相鎬	30	22	진양군 사봉면 부계 1114	0591-54-3840